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199

발의연월일: 2021. 5. 18.

발 의 자:김희국·강기윤·김상훈

구자근・김석기・류성걸

金炳旭・김영식・권명호

박형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골재채취업자 등에게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품질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월호 사고 이후 기존에 골재협회에서 실시하던 골재품질 조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실시해오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 성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품질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업체가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는 형식적인 품질확인에 그치고 있어 골 재에 대한 품질검사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골재품질관리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골재업체 등을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골재품질을 높이고 불량·불법 골재의 유통 및 사용을 차단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2항·제4항, 제22조의4, 제48조의2제4호 및 제49조의2제1

호의2).

법률 제 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8호의2 중 "품질시험을"을 "품질검사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제22조의4"를 "제22조의4"로, "골재의 품질을 조사하여야 한다"를 "골재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및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하고 시설·장비 및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점검·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4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험 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품질시험을 대행하게 하여야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품질시험"을 "품질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골재품질검사 결과를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제49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	
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	
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13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	
소하여야 한다.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인	8의2
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u>품질</u>	품질
<u>시험을</u> 거치지 아니한 골재	<u>검사를</u>
를 공급한 경우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지도・감독) ① (생 략)	제21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
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	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
에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

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 | 품질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 게 하거나 골재채취업자 및 골 재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조 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 통부장관은 골재 품질의 조사 결과(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할 수 있다. 이 보고한 결과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골재채 취업자가 관할 지역에서 채취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골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 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골재의 품질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⑤・⑥ (생 략)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 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금 해당 사무소 및 사업장 등 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 하게 하고 시설・장비 및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점검·검사하게

③ (현행과 같음)
4
제22조의4
골재품질관
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⑤・⑥ (현행과 같음)

-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① (생 략)
 - 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 금 품질시험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의 한 국산업표준 적합 인증 또는 품 질시험 결과에 관한 서류를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비치하 고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 다.

<신 설>

<신 설>

제22소의4(골재의	품실기원	순) (1)
(현행과 같음)		
②		
		<u>국</u>
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
리전문기관으로투	부터 매님	<u>년</u>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_
<u>F</u>	<u>-</u> 1
<u> 질검사</u>	_
	_
	_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골재품질검사 결과를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 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 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u><신 설></u>

2. (생략)

사항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
<u>다.</u>
제48조의2(수수료)
1. ~ 3. (현행과 같음)
4.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
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49조의2(벌칙)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받는 행위 2 (청체고 가오)
2. (현행과 같음)